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0나428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H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우

변 론 종 결 2022. 8. 10.

판 결 선 고 2022. 10. 12.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가단102607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8. 20. 접수 제73660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법원에서 원고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민법에 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기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오빠인 B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9. 2. 18.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원금 95,000,000원, 보증기간 2009. 2. 18.부터 2010. 2. 1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후 최종적으로 보증원금은 76,800,000원, 보증기간은 2019. 8. 8.까지로 연장되었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았고, 2009. 2. 19. 소외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2. 17.(이후 최종적으로 2019. 8. 8.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0. 2. 5.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간 2010. 2. 5.부터 2011. 2. 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후 최종적으로 보증원금은 79,200,000원, 보증기간은 2019. 8. 8.까지로 연장되었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았고, 2010. 2. 5. 소외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2. 1.(이후 최종적으로 2019. 8. 8.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이하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각 100,000,000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나. B은 2019. 8. 8.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최종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0. 14. 소외 은행에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리금 합계 156,245,8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B 및 피고의 아버지인 D이 2016. 6. 20.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E, B, 피고, F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2016. 12.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후 B의 채권자인 G가 D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2019. 8. 13. D 소유 재산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B, 피고, F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 8. 20. G가 대위하여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소유자 부분을 2016. 12.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단독 소유로 경정하였다.

마. 1) B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은, ①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중 잔여액 195,000,000원, ② I카드(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채무 2,600,000원, ③ J은행에 대한 채무 606,000원, ④ K카드에 대한 채무 10,200,000원, ⑤ L카드에 대한 채무 10,748,000원, ⑥ M은행에 대한 채무 2,768,000원 합계 221,922,000원이었다.

2) 반면,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1/4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각 부동산의 2016. 1. 당시 개별주택가격은 224,000,000원으로 위 각 부동산의 1/4 지분 가액은 56,000,000원이었다.

바. 한편,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2. 8. 서울회생법원 2020하단10569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21. 4. 26.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N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 대상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등 참조).

나. 부인 대상 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이 경우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그 채권이 변제자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변제자는 이전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용보증기금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합계 156,245,83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B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소외 은행의 B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은 민법 제481조에서 정한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변제자인 신용보증기금에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있었던 2016. 12. 20.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인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 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의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1/4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보증기금 및 다수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 중 1/4 지분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 대상 행위가 된다.

다. 부인권 행사의 효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2021. 8. 11.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1. 8.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경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소외 은행에 합계 268,367,225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바, 2016. 12. 20.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B은 D으로부터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 가액을 초과하는 돈을 증여를 받았는바 B의 법정상속분은 '0'이다. 따라서 B의 법정상속분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B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2009. 2. 19. 및 2010. 2. 5. 각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소외 은행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6. 2. 11. 2,000,000원, 2016. 8. 11. 23,000,000원, 50,000,000원, 98,000,000원, 22,529,339원, 72,837,886원 합계 268,367,225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2,000,000원 및 23,000,000원은 B의 2013. 11. 12.자 대출금에 대한, 위 50,000,000원 및 98,000,000원은 B의 2016. 3. 22.자 대출금에 대한, 위 22,529,339원은 B의 2014. 10. 13.자 대출금에 대한 각 변제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72,837,886원이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2,000,000원 등은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별개의 대출금에 관한 변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의 법정상속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8, 9, 12, 15, 16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B 명의의 계좌로, ① D이 2008. 3. 19.부터 2016. 3. 30.까지 합계 26,300,000원을, ② D의 배우자 O이 2012. 12. 20.부터 2015. 10. 12.까지 합계 28,250,000원을, ③ B의 동생인 F이 2010. 3. 25.부터 2015. 4. 20.까지 합계 16,010,000원을, ④ F의 아내인 P이 2008. 3. 6.부터 2016. 6. 10.까지 합계 20,93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과 D 사이에 D이 위 26,300,000원을 무상으로 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D이 O, F 및 P을 통하여 B에게 위 65,190,000원(= 28,250,000원 + 16,010,000원 + 20,930,000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D으로부터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의 가액을 초과하는 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주철현, 판사 정경수

부동산 목록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 141.9㎡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면석돌조 및 연외조 기외2층 주택

1층 58.31㎡

2층 52.56㎡

지하실 7.93㎡

끝.

